겸임교원 임용 규정

개정 2019.09.16. 개정 2021.08.26. 개정 2023.11.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혜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겸임교원에 대한 자격, 임용, 대우기준, 책임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3.11.28.>

제2조 (자격)
겸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① 담당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직자<개정 2021.08.26.>
②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
③ <삭제 2011.08.01.>
④ 소속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자

제3조 (임용절차)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한다.<개정 2015.2.24.>

제4조 (임용기간)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임용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3.11.28.>

제5조 (임용직급)<전문개정 2013.07.01.>
겸임교원의 임용직급은 겸임교수로 한다.

제6조 (대우기준)
겸임교원의 대우는 강사료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단, 특별한 경우 경력, 학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으로 월별 균등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9.09.16.>

제7조 (책임시간)
겸임교원은 주당 9시간 이하의 강의를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대 주당 12시간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11.08.01.,2021.08.26.>

제8조 (연구실적물 제출)
겸임교원에게는 연구실적물 제출을 유보할 수 있다.

제9조 (제출서류)
겸임교원은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신설 2023.11.28.>

① 심사위원은 2명 이상으로 강사채용심사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② 강사채용심사위원회 학과위원이 1명 인 경우 학과장은 위원장이 되고 교무처장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사한다.

제11조(재임용 통지 및 신청)<신설 2023.11.28.>

① 재임용 대상자에게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② 재임용 심의 신청통지를 받은 겸임교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겸임교원 재임용 심의 신청서[별표 1]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 없이 당연 퇴직한다.

제12조(재임용 절차)<신설 2023.11.28.>

① 겸임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해당 계열 및 학과에서 실시하며, 겸임교원 재임용 요건과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겸임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별표 4]에서 정한 재임용 평가표의 총점이 70점 이상 이어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재임용 심의대상자가 된다.

③ 재임용 평가표 총점이 7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강의평가 점수가 2개 학기 연속 70점 미만인 경우 재임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재임용 심의는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제②항에 따른 평가를 근거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⑤ 재임용 여부는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재임용 대상자로 결정된 교원은 겸임교원 재임용 학과추천서[별표 2]와 겸임교원 임용동의서[별표 3],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소명기회)<신설 2023.11.28.>

① 재임용 거부 사유서[붙임 5]를 통보받은 겸임교원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 신청한 겸임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재심의하며, 해당 겸임교원에게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

제14조(재임용 거부)

겸임교원이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임용 하지 않는다.<신설 2023.11.28.>

1.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지된 경우
2. 학과 구조조정 등으로 폐과한 경우
3.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임용한 경우
4.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각종 통계 등에서 정한 겸임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15조(의원면직)

겸임교원은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는 경우 총장에게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신설 2023.11.28.>

제16조(자격조건 상실 신고의무)

겸임교원은 임용기간 중에 원 소속기관에서 퇴직, 면직, 이직 등의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총장에게 즉시 신고하며, 산업체의 근무기간 공백이 1개월 이상 있는 경우는 해당학기 말에 당연 퇴직한다.<신설 2023.11.2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이전에 임용되어 재임 중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 규정 이전에 임용하여 재임 중인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0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 5조는 시행일 이후 임용된 자에게 적용한다.

부 칙(2015.0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9.1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8.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임용된 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신설 2023.11.28>

겸임교원 재임용 심의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학 과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만료일	
	주소		연락처	

□ **평가항목**

평가내용	세부평가 내용	평가근거
학사영역(20점)	강의계획서 · 강의시간 · 수업일수(휴 · 보강) · 성적입력, 서면 성적이의 신청 건수, 법정교육 준수 여부, 총장의 서면 경고 횟수	통합정보 및 교무팀 관련자료
강의영역(60점)	강의평가 학기별 평균점수	통합정보
근무영역(20점)	소속학과 근무평가	학과평가

위와 같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

※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통지 받은 후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소관부서에 신청함.

※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연 퇴직 처리함.

<별표 2> <신설 2023.11.28>

겸임교원 재임용 학과추천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자</td><td colspan="2">성명</td><td colspan="2"></td><td colspan="2">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원 소속 기관</td><td colspan="2">기관명</td><td colspan="2"></td><td colspan="2">직위(급)</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직 무
(상세히 기술)</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4">학력</td><td colspan="3">출신학교</td><td>입학년월일</td><td>졸업년월일</td><td>전공</td><td colspan="2">학위명</td></tr>
<tr><td>대학</td><td>학사</td><td></td><td>. . .</td><td>. . .</td><td></td><td colspan="2"></td></tr>
<tr><td>대학원</td><td>석사</td><td></td><td>. . .</td><td>. . .</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박사</td><td></td><td>. . .</td><td>. . .</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주요 경력</td><td colspan="3">기간</td><td colspan="6">내 용</td></tr>
<tr><td colspan="3">. . .~ . . .</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3">. . .~ . . .</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3">. . .~ . . .</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임용 내용</td><td colspan="2">학과</td><td colspan="3"></td><td>직명</td><td colspan="3">겸임교원</td></tr>
<tr><td colspan="2">임용기간</td><td colspan="7">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td></tr>
<tr><td rowspan="4">담당 교과목</td><td colspan="4">학년도 학기</td><td colspan="5">학년도 학기</td></tr>
<tr><td>교과목명</td><td>총시수</td><td>이론</td><td>실습</td><td>교과목명</td><td>총시수</td><td>이론</td><td>실습</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확인 사항
(√ 표시)</td><td colspan="4">원 소속기관 재직 및 경력확인 여부</td><td colspan="5">원 소속기관 직무와 담당 교과목 유사성 여부</td></tr>
<tr><td colspan="4">□ 확인완료 □ 확인불가</td><td colspan="5">□ 유사함 □ 유사하지 않음</td></tr>
</table>

첨부 : 학과 회의록 1부

위와 같이 겸임교원(으)로 재임용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_____과 학과장_____(서명)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3> <신설 2023.11.28>

겸임교원 임용 동의서

<table>
<tr><td rowspan="3">원 소속
기관
정보</td><td>기관명</td><td colspan="2"></td><td>대표자명</td><td></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r>
<tr><td>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대상자
정보</td><td>소속(부서)</td><td>직위(직급)</td><td>성 명</td><td>생년월일</td><td>입사일</td></tr>
<tr><td></td><td></td><td></td><td>. . .</td><td>. . .</td></tr>
<tr><td rowspan="5">원 소속
기관
근무
사항
(직무별)</td><td rowspan="2">직무내용
(상세히 기술)</td><td colspan="2">기 간
(입사일 순으로 작성)</td><td rowspan="2">경력기간
(년 월 일)</td></tr>
<tr><td>년 월 일</td><td>년 월 일</td></tr>
<tr><td></td><td>. . .</td><td>. . .</td><td>. . .</td></tr>
<tr><td></td><td>. . .</td><td>. . .</td><td>. . .</td></tr>
<tr><td></td><td>. . .</td><td>. . .</td><td>. . .</td></tr>
<tr><td colspan="3">계</td><td>. . .</td></tr>
<tr><td>고용
형태</td><td colspan="5">정규직*( ) / 비정규직( )
※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 임용 불가
※ 비정규직은 겸임교원 임용 불가
* 정규직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직원을 의미</td></tr>
<tr><td>근무
형태</td><td colspan="5">상근직( ) / 비상근직( ) ※ 비상근직은 겸임교원 임용 불가</td></tr>
<tr><td>동의
기간</td><td colspan="5">20 . . . ~ 20 . . .(1년)</td></tr>
</table>

상기인의 혜전대학교 겸임교수 겸직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대 표 : 직 인

혜전대학교 총장 귀하

※ 첨부서류 : 학위 및 성적증명서(변동 시) 1부, 재직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1부.

<별표 4> <신설 2023.11.28>

겸임교원 재임용 평가표

소속	성명	교원자격기준
		적합□, 부적합□

평가항목	항목배점	배점한도	취득점수
- 강의계획서 및 성적입력기간 준수 - 강의시간 및 수업일수(휴·보강) 준수 - 서면 성적이의 신청 건수 - 법정 교육 준수 여부 ※ 미 준수 시 1건당 2점 감점 - 총장의 서면 경고 횟수 ※ 1회 5점, 2회 이상 10점 감점	20	20점	
- 강의평가 평점 90점 이상 - 강의평가 평점 80점 이상 ~ 90점 미만 - 강의평가 평점 70점 이상 ~ 80점 미만 - 강의평가 평점 50점 이상 ~ 70점 미만 - 강의평가 평점 50점 미만 ※ 100점 만점	60 55 50 45 40	60점	
- 교원으로서의 자질 및 학과기여도 ※ 종합적으로 평가	20	20점	
합계		100점	

1) 재임용 기준 : 70점 이상(단, 기준점수를 충족하더라도 강의평가 점수가 2개 학기 연속 70점미만인 경우 재임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2) 강의평가점수 : 100점 만점 기준이며, 해당 겸임교원의 학기별 강의평가점수 평균으로 평가함.

3) 겸임교원 재임용 평가는 심사위원 과반 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로 평가함.

심사위원회 평가의견	
평가결과(재임용 여부)	□예 □아니요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직위	심사위원장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심사위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심사위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심사위원	성명	(인 또는 서명)
심사위원 소속		직위	심사위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5> <신설 2023.11.28>

겸임교원 재임용 거부 사유서

소속학과	직 급	성 명
	겸임교원	

<재임용 거부 사유>

□『혜전대학교 겸임교원 임용규정』제12조 제④항에 의한 심의결과 혜전대학교 20 학년도 학기 겸임교원 재임용이 거부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거부사유** : 『동 규정』 제12조(재임용 절차), 제14조(재임용 거부), 교육관계법령(고등교육통계, 정보공시) 및 본교에서 정한 규정 등에 의거,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부동의.

□ 아울러 『동 규정』 제13조 제①항에 의거,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의 신청양식은 자유양식 사용)

-제출방법 : 이메일 @hj.ac.kr, 우편(제출마감일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우편번호 32244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학1길 19 혜전대학교 대학본부 1층 교무팀 인사담당자

-제출기한 : 20 . . .( )까지

20 . . .

혜전대학교 총장